

# 스마트폰 수험총서

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MEDICAL CARE & HEALTHY



2026/27

# 혈액관리법

- ☆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☆ 30분 완성, 국시원 시험 등 대비
- ☆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
- ☆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

도서명 : 혈액관리법

ISBN : 979-11-7393-277-9

발간일 : 2026-06-22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[by4782@gmail.com](mailto:by4782@gmail.com)

정가 : 4,500원



# 혈액관리법

(이하 법)

## [목차]

제1절 총칙(p2)

제2절 혈액의 관리(p8)

제3절 보칙(p21)

제4절 벌칙(p23~25)

## [약어]

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

부령은 보건복지부령

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

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제조관리자는 혈액제제 제조관리자

## 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## 제1절 총칙

1~5조

### 1. 목적

-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규정
- 수혈자/헌혈자 보호, 혈액관리
-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

## 2. 정의

### 가. 혈액

-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와 혈장

### 나. 혈액관리업무

- 수혈이나 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혈액 채혈, 검사, 제조, 보존, 공급, 품질관리

### 다. 혈액원

- 혈액관리업무 하기 위해 허가 받은 자

## 라. 헌혈자

- 자기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 제공

## 마. 부적격혈액

- 채혈 시나 채혈 후 이상이 발견된 다음  
혈액이나 혈액제제

1) 채혈과정에서 응고, 오염

2) 다음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

- B형/C형 간염검사

-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

- 사람T세포림프친화

- 바이러스(HTLV) 검사 (혈장성분은 제외)
  - 매독검사
  - 간기능검사(ALT검사, 수혈용 혈액만 해당)
- 3) 감염병 요인, 약물 요인,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혈
  - 4) 심한 혼탁, 변색, 용혈
  - 5) 혈액용기 밀봉/표지 파손
  - 6) 보존기간 경과
  - 7) 장관이 부적격으로 정함

## **바. 채혈금지대상자**

- 감염병 환자,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 미달자로서 헌혈 하기에 부적합

## 사. 특정수혈부작용

- 수혈한 혈액제제로 발생한 다음 부작용
  - 사망
  - 장애
  -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
  - 바이러스등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
  - 의료기관 장이 상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

## 아. 혈액제제

- 혈액을 원료로 해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전혈, 농축적혈구, 신선동결혈장, 농축혈소판 등에 해당

## **자. 원료혈장**

- 혈액제제 중 혈장분획제제(혈장을 원료로 제조과정 거쳐 얻어진 의약품) 제조를 위해 혈액원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 공급하는 혈장

## **차. 헌혈환급예치금**

- 수혈비용 보상,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장관에 예치

## **카. 채혈**

-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 제조를 위해 헌혈자 혈액 채취

## 타. 채혈부작용

- 채혈 후에 헌혈자에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, 피하출혈 등 예상 못한 부작용

## 3. 누구든지 **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**

- 가) 금전, 재산상 이익,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(헌혈증서 포함) 제공, 제공약속 못함
-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(헌혈증서 포함) 제공받거나 받을 것 약속 못함
- 나) 상기 위반 행위 교사/방조, 알선못함
- 다) 위반 행위 있음을 안 때 행위 관련 혈액 채혈, 수혈못함

## 4.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

- 적극적 헌혈기부문화 조성  
과 건강한 국민 헌혈 장려를 위해 대국민 교육/홍보 등 지원책 수립/시행

## 5. 국가헌혈추진협의회(이하 협의회)

### 가. 설치

- 상기 책무 수행을 위해 장관 소속으로 둠

나. 심의사항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 
과 헌혈 장려를 위한,

- 정책 방향 설정, 협력/조정

- 제도 개선, 예산 지원
- 장관 인정 사항

## 다. 구성

1)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내

2)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2차관

3) 위원은 다음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

공무원,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, 이에  
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 장이 지명

- 재정경제부

- 교육부

- 국방부

- 행정안전부

- 국무조정실

- 장관 인정 중앙행정기관

## 라. 운영

- 1) 위원장은 회의 소집, 그 의장됨
  - 2) 재적 과반 출석 개의, 출석 과반 찬성 의결
  - 3) 간사 1명
- 사무 처리
-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 지명
- 4) 이외는 협의회 의결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함

## 6. 헌혈 권장 등

- 가)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함
- 장관은 기념행사 실시 등 건강한 국민에

헌혈 권장 가능

나) 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 경비

전부/일부 보조 가능

## 7.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

### 가. 헌혈자는

-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 현장에서 존중받음
- 안전한 혈액 채혈/공급을 위해 신상/병력에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

### 나. 혈액원

-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채혈

-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하도록 유의 사항 설명, 채혈 동의 받음
- 헌혈자 개인비밀이 보호될 환경에서 문진 사항 기록, 면담
- 채혈부작용 여부 세심히 관찰, 예방 조치
- 채혈부작용시 지체없이 조치

## 8. 혈액관리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

가) 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/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혈액관리위 심의 거쳐

5년마다 수립

- 미리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
- 중앙행정기관장, 지자체장, 관련 기관 등에